

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

하남시장(법무감사관)

제출일 : 2026. 7.

1. 제안이유

-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시민의 공익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고대상 조항 신설

- 1) 제2조제4호의 내용을 신설 조항으로 옮겨, 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부조리 내용을 분리하여 명시하도록 함.

나. 신고대상의 확대

- 1) “공무원 등”의 부조리 신고대상에서 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.

다. 신고기한의 연장

- 1) 현행 규정의 신고기한(2년)이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(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) 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기에, 이를 징계시효(3년)와 일치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. 또한, 부조리

행위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이내의 신고기한을 적용하도록 함.

- 2)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범죄(수뢰액 3천만원 이상)에 한하여, 신고기한을 「형사소송법」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연장함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근절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, 신고기한을 관련 법령의 징계시효와 연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임.
-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대상에 공무원·기간제근로자 및 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, 부조리 신고기한을 「지방공무원법」상 징계시효와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, 신고제도의 적용 범위와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- 검토 결과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서,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,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